

2000. 4. .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 붙 임 : 1. 발의의원 서명서 1 부  
 2.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조병석 의원(인)  
 외 3 인

선 결 의 장	[Handwritten Signature]		결재 (공용란)	부의장	
접수일시	2000. 4. 21 시	418		극장	[Handwritten Signature]
처리과	제천시의회			담당	[Handwritten Signature]

## 제천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서 명 서

의 원	서 명	비 고
조평석		
최영홍		
劉永奎		
최상기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00. 4.	

제천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자	조병석 의원 외 3인
발의년월일	2000. 4 . .

##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8
----------	-----

발의년월일 : 2000. 4. .

발 의 자 : 조병석 의원의 3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6,672호 '99. 12. 31)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의 용어를 정비코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상 일부 용어의 통일 정비 및 조정(안 제3조 및 제13조)
-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촉된 기간중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의 용어로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용어를 정비(안 제13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46조의 2
- 공무원여비규정

## 제천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별표 제1호 서식”을 “별표 1”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비는”을 “수당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한다

제13조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하며, 동조 단서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위	촉	장
		○ ○ ○
<p>제천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p>		
		년 월 일
	제천시 의회의장	①

[ 별표 2 ]

구 분	액	수
수 당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 ③(생략)                      ④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u>별표 제1호</u>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p>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u>일비</u>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u>일비</u>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u>일비</u>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u>일비</u>를 지급한다.</p> <p>②(생략)</p> <p>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u>일비</u> 또는 <u>여비</u>는 <u>별표 제2호</u>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u>여비</u> 지급기준 외에는 <u>국내여비규정</u>에 준한다.</p> <p>[별표 제1호]</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 8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able> <p>[별표 제2호]</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 80%;">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일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r> <td>여비</td> <td>국내여비규정 "별표2"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td> </tr> </tbody> </table>	(생략)	구분	액 수	일비	50,000원	여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③(현행과같음)                      ④ . . . . .</p> <p><u>별표 1</u> . . . . .</p> <p>제10조(수당의 지급) ①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수당을</p> <p>②수당은 . . . . .</p> <p>제11조(수당의 계산) ①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수당 . .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급기준) . . . 수당 . . . . .</p> <p><u>별표2</u> . . . . .</p> <p><u>공무원여비규정</u> . . . . .</p> <p>[별표 1]</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 80%;">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able> <p>[별표 2]</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 80%;">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수당</td> <td>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td> </tr> <tr> <td>여비</td> <td>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td> </tr> </tbody> </table>	(현행과 같음)	구분	액 수	수당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
(생략)															
구분	액 수														
일비	50,000원														
여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														
(현행과 같음)															
구분	액 수														
수당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														